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호 250

제출연월일 : 2007. 10. 29.

제 출 자: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 자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 8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연 20,000천원 / '08 추경예산 확보계획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합의

라. 기 타

(1)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7. 10. 5. ~ 10. 23.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의료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복지지원 등) (생략)	제8조(복지지원 등) (현행과 같음)
1. ~ 2.(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의료비 <u>지원</u>

관 계 법 령

□「국가보훈기본법」

-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 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 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 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 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4.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
 -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11. 23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10. 29 대전광역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10.30

다. 상 정 일 자 :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23)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

1. 제안이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근거를 마련 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과 생활안정을 도모코자함.

2.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 (안 제8조제4호).

Ⅲ.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고귀한 희생을 하신 독립유공자가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주이며, 대한민국은 이분들의 희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자긍심을 진작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에서 지원 하는 연금 외에 별다른 지원시책이 없어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 하겠음.

그러나,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보호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 한하여 5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전광역시립 의료시설의 빈약으로 인한 독립유공자 일반 환자 가료의 어려움과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의료비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Ⅳ. **질 의 요 지**: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